

제 448 호

1974. 6. 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 덕 석

편집장 : 문화공보실장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54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 3

제 855 호 : 서울특별시미관지구내건축조례중개정조례 7

◎ 규 칙

제 1374 호 : 서울특별시계약직원규칙 7

◎ 고 시

제 6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9

제 69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9

제 70 호 : 도시계획시설 (소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0

제 71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10

제 72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1

제 73 호 :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도시

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1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00 호 :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허가..... 12

제 101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13

제 104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일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3

제 105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에정지지정일부
변경공고..... 14

제 107 호 : 묘지관리사무소 및 지소공인공고..... 15

제 108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7

◎ 사 령..... 17

◎ 정 징..... 23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6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85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는 지하철 운수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 지하철운수사업이라 함은 지하철여객운송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 3 조 (관리자의 지정) ①지하철운수사업을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지하철 본부장으로 보한다.

제 4 조 (일사판타) ①관리자는 지하철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제 5 조 (관리자의 책임) 법제 48 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경정은 일반회계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관리규정) 관리자(법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운수사업에 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철운수사업은 법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의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회계년도)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9 조 (일반회계의 부담) 법제 14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3.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에서 대행하는 제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다고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 10 조 (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지
2. 신규 노선의 건설과 자본의 증식을 조력하는 개량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의 출자금이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제 1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납부책임을 위한 금액계산은 지하철운수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 11 조 (지방채) ① 법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

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
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음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
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 13 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
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
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1. 법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
에는 이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제회계금
3. 전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제 10조

제 4 항의 규정액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제 1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액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결정책임금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 14 조 (회전기금의 설치) 영업수입
상 비축을 요하는 주요 실사자산
의 운용업무는 따로 조례가 정하거
나에 의하여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15 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제 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할 중
요자산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규칙
으로 한다.

제 16 조 (요금) 지하철운수사업이 계
공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금을
징수한다.

제 17 조 (제리상황의 보고) 법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지하
철운수사업의 제리상황을 시장에
보고할 때에는 시상표 및 자규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 3. 예산집행보고서
-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 5. 기타 필요한 자료

제 18 조 (업무상황보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업무상황을 9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현황
-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 3. 전 각호에 제기한 외에 지하철운수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여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항의 업무상황을 보고 받아 이를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9 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자는 지하철운수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 2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영업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조례제 649 호 (70.12.23)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중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본금) 영업개시 전일까지 지하철건설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차관, 공채 및 기타의 부채는 이 사업의 부채로 정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출자로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중 개정조례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197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조례제 855 호

서울특별시미관지구내건축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중 3종미관지
구안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한외교기관의 대지내에 있는
공관·공보관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존건축물로서 이를 철거하고 건축하
는 경우에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내의 조망·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계약직원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197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74 호

서울특별시 계약직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
직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체결) ①시장이 지방계
약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영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사를
받아 별표제1호서식에 의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사항과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건항에 의한 고용계약서는 2부
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 부속 보관하며 고용계약서의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
여야 한다.

③고용계약서작성시 보수액결정은 업
무의 난이도·기술의 특수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내용과 상응한
보수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 요청) 지방계약직원의 고
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의장은 고
용예정일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 고용의 필요성 및 업무내용
2. 자격 및 고용구분
3. 고용계약서(안)
4. 고용불가시의 대책(대책수단)
5. 당해 업무의 현행 수행방법
6.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부 무) ①지방계약직원의 부무
에 대하여는 영제 12조와 서울특별
시공무원부무조례 제 6 조 내지 제 9
호 및 제 21 조를 준용한다. 다만 비
전임직원에 대한 부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계약서의

비전임직원의 고용조건에 관한 부
속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고용기관의 장은 지방계약직원에
대하여 영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전 협의) 시장은 제 2 조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
하여 고용예정자와 사전 협의를 하
여야 한다.

1. 계약사업의 필요성 및 업무내용
2. 고용계약서(안)
3.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심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 (고용구비서류) ①지방계약직
원의 고용구비서류는 서울특별시인
사규칙에 의한 공무원신규채용에 있
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며 신원조사회보서는 3급갑류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의 고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
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6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 1. 당시 환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5.29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조서(별첨)

○ 서울특별시고시제 69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1. 건설부고시제 137호(74.5.10)로 변경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용도지역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나. 지적승인조서(도면표식와 같음)

1974.5.30

서울특별시장

(개)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지적승인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준공업지역	도봉구 도봉동 60번지 주변	358,816	
"	도봉구 양학동 320부락 주변	449,758	

(도면영략)

도면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70 호

도시 계획시설 (소로)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소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주택국개량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5.31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조서별첨

별첨도면표시와 갈음 (도면생략)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71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공원)을 건설부 고시제 465 호 (71.8.6) 로 신설 결정 고시된 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5.31

서울특별시장

지적승인조서 :

별첨조서참조

별첨도면표시와 갈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 및 출장소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 호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198 호 (71.4.7) 및 건설부 고시제 116 호 (73.3.31) 로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지 한다
 첨부 1.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 (도면포시와 같음)
 2. 지적고시도면 (도면생략)
 1974. 6. 3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주거지역	영등포구 공합동 55주번 방화동 612주번	728,183㎡	
소 계	1 개 지 역	728,183㎡	
상업지역	영등포구 공합동 45주번	75,945㎡	
•	관악구 노량진동 13주번	61,906㎡	
•	서대문구 수색동 106주번	38,864㎡	
소 계	3 개 지 역	172,715㎡	

별첨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3 호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 당사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

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및 동제 6 호 (74.1.5)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추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 관계도면 (도면생략)
 1974. 6. 4
 별첨 1. 시설조서 및 용도지역변경조서. 서울특별시

1) 시설조서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유통업무설비	도봉구월계동 424 (성북역주변)	402,700	성북유통업무설비

2) 용도지역 변경조서

지역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324,625,637	감 402,700	324,222,937
주거전용지역	1,040,612		1,040,612
상업지역	17,522,987	증 402,700	17,925,687
준공업지역	37,709,200		37,709,200
녹지지역	339,977,564		339,977,564
계	720,876,000		720,876,000

별첨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00호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허가

서울특별시 관내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행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이를 새로 허가하였기 공고한다.

1974. 5.

서울특별시청

1. 취 소

공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7-15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창)

대표자 : 시장 양 령식

<p>취소일자: 1974. 5. 27</p> <p>2. 하 가</p> <p>상호: 리왕기업사</p> <p>소재지: 서울특별시 고성동구 잠원동 13-7</p> <p>대표자: 김 성 희</p> <p>취가일자: 74. 5. 27</p>	<p>서울특별시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공고</p> <p>서울특별시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와 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4. . .</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장</p>
--	--

◎ 서울특별시공고제 101 호

1. 지정 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4수출목표액	비고
508	대성전선(주)	한정훈	도봉구미아동 61-3	나 동 선	353,600 \$	
909	신용가계제작소(주)	조기성	영등포구고척동 76-183	공압기계제작기	559,910 \$	
1506	봉원실업(주)	정광진	영등포구가양동 7-4	합 성 피혁	696,634 \$	
1109	삼성정공(주)	김용산	관악구본동 455-1	시계(탁상시계)	870,257 \$	
1507	중앙제련공업사	심현직	영등포구가양동 10-3	유 기 안 료	110,248 \$	

2. 지정 취소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비고
508	삼물물산(주)	백봉기	도봉구수유동 23-6	여행용가방	지방으로부터전출	
627	봉창물산(주)	손정수	서대문구를평동 310-222	책, 보름	대기업으로성정	

◎ 서울특별시공고제 104 호

보지구획정리사업계획및환지계획 일부변경을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일부를 다음과같이 변경하고자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6 조 제 11 항
제 56 호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12 조 제 34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공람공고 한다.

2. 관제도시권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지
가. 사업계획 변경조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
게 통보될것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1974. 6. 3
서울특별시장

지 구 명	시설명	변 경 조 서			변 경 후
		폭	연장	위 치	
시 용 지 구	도로	8 m	183m	152 구획과 153 구획사이	변 경 지

나. 공람개요

1) 사업명 : 시용토지 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산동 290-31 번지일대

3) 변경조서 및 도면 작성 (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

◎ 서울특별시 공고제 105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예정지
지정 일부 변경 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수가, 시용
김포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별첨도
서와 같이 변경하고, 토지구획정리 사
업법 제 56 조 및 동법제 57 조의 규정
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서 및 변경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와 관할구청 및 관할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1) 신조공인사용일자: 1974. 6. 7. 09:00
- 2) 공인회 인형

첨부: 환지에정지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생략)

1974. 6. 3.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공고제 107 호

묘지관리사무소및지소공인공고

서울특별시 조례제 807 호 (73.12.

6) 로 서울특별시립묘지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서울특별시립묘지관리사무소 및 지소의 각종 공인을 다음과 같이 신조하였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 묘지관리사무소장인



(2) 묘지관리사무소제인



(3) 분압지출원인



(4) 분입물품출납원인



(5) 분입수입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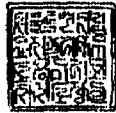
(6) 국민저축조합장인



(7) 공원묘지지소장인



(8) 용미리묘지지소장인



(9) 백척리묘지지소장인



(10) 망우리묘지지소장인



(11) 내곡리묘지지소장인



◎서울특별시공고제 108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경계획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천호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환경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와 제 55 조 및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2. 환경계획변경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서류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4. 6. 1.

서울특별시
공람 개요

- 1. 사업장: 천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 2. 변경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동, 명일동, 천호동, 둔촌동일부
- 3. 변경필지수: 36 필지
- 4. 변경조서및도면
별첨 (생략)

사 령

◎ 1974. 5. 28.

재무국세정과 지적기과 이광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74년 5월 22일

대 통 령

◎ 1974. 5. 29.

마포구 지방농림
기원보시보 홍기원
본인 임용포기도 74.5.15자

신규임용발령 (발령지 475호)

을 동일자로 취소함.

성동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원철 이삼옥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 2

제 1 항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1974. 5. 30.

주택건설과 지방전기
기원보시보 이창기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3 호

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명함.

◎ 1974. 5. 31

구희수원지 지방화공
사무소 기사보 양방현

<p>노랑진수원지사사무소파견 (74. 9.31 까지) 근무를 명함. 영동포수원지 지방화공 사 무 소 기사보시보 이 원 갑 원에외하여 그 직을 면함.</p>	<p>박은하 도봉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 1974. 6. 1. 김귀순 영동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정정숙 도봉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이정자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이옥순 성북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오현희 종로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김경숙 관악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안남주 도봉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조명규 관악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양경남 도봉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양경남 관악구보건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p>

<p>이 현</p> <p>지방보건지원보시보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유경호</p> <p>지방보건기사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p>
<p>최 중 선</p> <p>지방보건기사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서귀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장순만</p> <p>지방보건지원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상설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조 경 진</p> <p>지방보건기사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이 남 현</p> <p>지방보건지원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김 행 호</p> <p>지방보건기사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도봉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최 영 대</p> <p>지방보건지원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도봉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이 영 성</p> <p>지방보건기사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관악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나 상 성</p> <p>지방보건지원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 1 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손 광 배</p> <p>지방보건지원보시보(임상병리)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천호출장소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관악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 관악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도봉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 관악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도봉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건축과건축2계장직무대리 지방건축기사</p>
<p>1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p>	<p>지방건축기과에 입함. 건축2계장에 보함.</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입함.</p>	<p>2호봉을 급함. 건축과근무를 명함.</p>

최두봉

이정권

남정윤

김일환

서대정

이윤주

정형교

이희만

장영각

한인수

박남중

윤태용

이민우

<p> 성북구건축과 지방건축기사 김창복 지방건축기사에 임함. 건축과장의 보합. 2 호봉을 급함. 심동구근부를 명함. </p>	<p> 지방회계지원보좌 임함. 3 호봉을 급함. 서림문구근부를 명함. 관악구 지방행정기사보 김희갑 낙성대파견근부를 명함. 양원 과 농림기사보 유지일 영동출장소파견근부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토목기사보 홍익수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p>
<p> 청도청도 기술연구소 토목기원보 지영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진입을 명함.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수도사업소근부를 명함. </p>	<p> 조경식 지하철본부 근부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이복산 공원과 (낙성대) 파견근부를 명함. (74.6.5-74.12.4) 관악구 지방행정주사 서건문 공원과 (낙성대) 파견근부를 명함. (74.6.5-74.12.4) </p>
<p> 마포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이병관 지방행정사무원에 수서함. © 1974.6.4. 은평출장소 지방토목기원 김광규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p>	<p> 공무원교우회 지방행정 사무원 권인권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성북구수도 사업소장 최두택 지방행정사무원 배상승 </p>
<p> 광복청주시 지방지적 조사부과 기원보 서울특별시진입을 명함. </p>	<p> 성광원 지방서기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성북구수도사업소장에 보합. </p>

<p>관악구수도 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청송 직무대리</p> <p>지방서기관에 임함.</p> <p>4호봉을 급함.</p> <p>관악구수도사업소장에 보함.</p>	<p>구 덕 일</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동부병원근무를 명함.</p> <p>박혜옥</p>
<p>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홍 직무대리</p> <p>지방서기관에 임함.</p> <p>5호봉을 급함.</p> <p>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장 에 보함.</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남부병원근무를 명함.</p> <p>김명균</p> <p>지방보건기원보시보(X선분야)에 임함.</p>
<p>관악구부청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이희찬</p> <p>지방서기관에 임함.</p> <p>4호봉을 급함.</p> <p>관악구부청장직무대리를 명함.</p>	<p>남부병원근무를 명함.</p> <p>오순희</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p>
<p>◎ 1974.6.7.</p> <p>용 산 구 지방농림기원 조 매 시</p> <p>관악구파견 (74.10.31 까지)</p> <p>근무를 명함.</p> <p>◎ 1974.6.10.</p>	<p>유학순</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p> <p>신동호</p> <p>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동대문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p> <p>박학현</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p> <p>안영일</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성부구보건소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p>[정정]</p> <p>시보제 447 호 (74.5.27) 차경 조례반중 오기되었기 다음과 같이</p>	<p>정정한다.</p> <p>1974. 5.30</p> <p>서울특별시장</p>
<p>오 기</p>	<p>정 정</p>
<p>제 853 호 ■ 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 금지금조례중 개정조례</p>	<p>제 853 호 ■ 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 금지금조례중 개정조례</p>